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5호로 2020년 6월 5일 고기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의 설립·등록 및 해산, 신고사항의 변경시 자율방범연합대를 거치도록 설립·등록 등의 신고 방법을 정비함(안 제7조)
- 나.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경비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다. 자율방범연합대가 방범대의 사업계획 수립, 운영비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범대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등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을 자율방범연합대에 위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0. 6. 1. ~ 6. 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등록 및 해산 등 각종 신고 등 자율방범연합대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비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확대 및 구체화와 자율방범 연합대의 활성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안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봉사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예산의 규모, 사용목적 등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